의안번호	제629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4년 7월 3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29

제출연월일 : 2024년 7월 3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문화재 법령을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도 자치법규의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

○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령 조항 등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신뢰성 제고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충청북도 문화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4조,제5조)

○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 (안 제21조, 제22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 도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및 조사 (안 제47조, 제49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소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함으로써 향토문화와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2. “충청북도 지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및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을 말한다.

3. “충청북도 문화유산자료”란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국가등록문화유산, 충청북도 지정문화유산(이하 “도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 및 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도지사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보호물”이란 도지정문화유산 및 충청북도 문화유산자료(이하 “문화유산자료”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5.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도지정문화유산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와 토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
7. “충청북도 등록문화유산”이란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호와 제39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도지사가 등록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8. “역사문화환경”이란 도지정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제2장 충청북도 문화유산위원회

제3조(설치)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충청북도 등록문화유산(이하 “도등록문화유산”라 한다)의 등록과 말소
4.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명령
5.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현상변경 허가
6. 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나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의 명령
7.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그 밖에 문화유산의 관리와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국가유산관리학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제6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3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수는 도지사가 정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유산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제4조에 따른 사항을 문화유산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석 위원
3. 심의 내용과 의결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등의 위원, 전문위원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등의 심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된 경우
4.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품위 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등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사·심의에 참여하는 위원, 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기반조성

제1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문화유산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 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18조(화재예방 및 재난방지 등)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에 대하여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하여 문화유산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따로 정한다.

④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난방지를 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문화유산 금연구역의 지정) ① 법 제14조의4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주거용 시설은 제외한다)
2. 도지정문화유산 기념물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주거용 시설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중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은 법 시행규칙 별표의 1의2에 따른다.

제20조(문화유산 보호단체의 지원·육성) 문화유산 보호·보존·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4장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제1절 지정 · 등록 및 해제 · 말소

제21조(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도지정문화유산은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22조(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2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또는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제2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시기의 연기) 제2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이라 한다) 검토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 시기가 도래한 문화유산이나 그 보호물·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제25조(지정 또는 등록에 관한 자료 제출) 시장·군수는 지정 또는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이 있을 때에는 사진, 도면과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지정 또는 등록 고시 및 통지) ①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 또는 등록할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7조(지정서 또는 등록증 교부)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지정 또는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또는 등록은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등록을 통지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도보에 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9조(지정의 해제 또는 등록의 말소) ① 도지사는 법 제74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 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하며,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또는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효력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제28조를 따른다.

④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등록된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등록된 날 해제 및 말소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임시지정)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이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하여 시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지정한 문화유산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관하여는 제21조와 제26조를 준용하되,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보의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31조(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도지사는 오래되지 않은 향토유산이라도 도시화 과정에서 인멸될 우려가 있고 향후 국가유산으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유산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절 관리

제32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①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33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군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군이나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의견 또는 지정하려는 시·군 및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도지정문화유산·도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관리자와 해당 시·군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에 대한 관리행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4조(허가사항)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

제35조(허가기준) 도지사는 제34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수립되어 있을 것

제36조(허가사항의 취소) ① 도지사는 제3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3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7조(신고 사항)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連署)로 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반출하거나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 제34조제3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그 밖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제38조(행정명령)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관리상황이 그 문화유산의 보존에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의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관한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34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명령을 명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 및 관리단체의 장은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연구기관에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수리 등) ①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문화유산을 수리하려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나 국가유산수리업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이라 한다)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면서 수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 수리업무를 신의와 성실로 수행할 것
2. 문화유산 수리 설계도서와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 기준에 적합하게 수리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유산 수리공사의 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과 수리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제41조(국가유산수리 용역 시공 평가 등) ① 국가유산수리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한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수리업자의 기술 수준과 국가유산 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 용역사업이나 수리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수리업자를 1년 동안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국가유산수리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할 때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를 우수업자 지정 기간 동안 우대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유산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건설공사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도지사, 시장·군수가 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인·허가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라 하여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수질오염을 초래하거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계(水系)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 축조 등의 공사

2. 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행하는 도지사, 시장·군수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규모·높이·모양·재질·색상 등이 문화유산과 조화되는지의 여부
2. 문화유산 주변의 경관과 조망의 훼손 여부
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나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4.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5. 수계·수량 변경이나 수질 오염 여부
6. 고도경관이나 역사·문화·자연환경 저해 여부
7. 매장유산의 유존 여부
8.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검토

④ 도지사, 시장·군수는 건설공사 등의 인·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제1항에 따라 검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제3항에 따라 검토한 후 위원회 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현상변경)를 받아야 한다.

2.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이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현상변경)를 받아야 한다.

제43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도지정문화유산의 관리·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39조에 따른 기록의 작성·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시장이나 군수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4조(손실의 보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38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제49조제4항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4.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보관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5조(시·군의 경비부담) 시장·군수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에 대하여 그 관리·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46조(준용) 임시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38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제44조를 준용한다.

제3절 공개 및 조사

제47조(도지정문화유산 등의 공개) ①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도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도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 (관람료의 징수) ①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나 관리단체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정한다.

제49조(정기조사)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에 대해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등에게 문화유산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유산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유산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발굴·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는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아래 각 호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⑦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과 그 말소

4. 도지정문화유산의 수리 및 복구

5. 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와 이전

6. 그 밖에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0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 요구 및 조사에 필요한 행위 범위, 신분증 휴대 및 제시, 조사 행위에 대해서는 제4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51조(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록문화유산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52조(매장유산의 공고) 시장·군수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문화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 또는 시·군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매장유산의 보호) ① 시장, 군수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54조(개발사업에 대한 협의 및 조치명령) ① 도지사는 매장유산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 대해 협의하거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1. 매장유산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2. 매장유산법 제32조제1항 가목 외의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에 포함되는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이 4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② 도지사는 매장유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보호물, 보호구역과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행하는 명령・지시・기타 처분 등에 대하여 권리 변동이 있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소유자의 권리 의무가 승계된다.

② 제30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되는 권리・의무는 그렇지 않다.

제56조(표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발견・신고한 매장유산이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로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매장유산을 발견・신고한 자
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임시지정문화유산의 멸실, 도난, 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임시지정문화유산을 보호, 공개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보호 또는 공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된 자
4. 문화유산 보존・관리와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5. 문화유산 보존 관련 전람회와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제5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31조에 따른 관리단체의 지정
2. 제36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 행위자 등에 대한 행정명령 및 조치
3. 제38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경미한 수리

제58조(국가유산 방재의 날) ①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국가유산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국가유산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② 국가유산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청문) 제3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그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충청북도 지정문화재와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중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유산은 제21조, 제22조, 제30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자연유산을 제외하고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지명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에 따라 임명·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종전의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앞쪽)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

대상문화유산	종 류		명칭		관리번호	제 호
사 업 개 요	사업명					
	위 치			문화유산 외곽 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문화유산 입지 현황 분석 (뒤쪽 참조)	해당 문화유산의 특성					
	해당 문화유산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그 밖의 문화유산 특이사항					

검 토 항 목	해당 여부	
1. 해당 도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인가?	[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2. 해당 도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인가?	[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3. 해당 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	[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4. 해당 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인가?	[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5. 해당 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	[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6. 도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인가?	[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7. 도지정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도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	[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8. 그 밖에 도지정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도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인가?	[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종합의견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영향 여부: [ ] 있음, [ ] 없음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뒷쪽)

문화유산 입지 현황분석란 작성방법	
(이 내용은 건축 허가신청서를 보고 담당 공무원이 사전 작성하며 관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내 용	작 성 방 식
해당 문화유산의 특성	문화유산의 재질(석조, 목조, 매장유산, 동식물 등), 문화유산 이전 여부, 향후 복원가능성 등
해당 문화유산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현황(지형, 교통, 도로 여부), 입지, 면(面)문화유산에 포함된 점(點)문화유산 여부, 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건(용도구역, 도시계획 등), 주변에 이미 조성된 마을 현황, 주거환경 등
그 밖의 문화유산 특이사항	그 밖에 사업 신청지와 문화유산의 관계(정면, 배면, 시야를 가리는지 여부), 주변의 기존 현상변경 등의 허가 여부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1호

○ 사 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수인

관 련 법 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문화유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3. 27., 2020. 12. 22., 2023. 3. 21., 2023. 8. 8.>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 8. 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가. 삭제 <2023. 3. 21.>
   나. 삭제 <2023. 3. 21.>
   다. 삭제 <2023. 3. 21.>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2023. 8. 8.>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유산”이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
1.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유산
2. 시·도등록문화유산: 시·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유산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⑧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 11. 26.>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외국에 소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21., 2019. 11. 26., 2023. 8. 8.>
⑩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화”란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수집·분석·유통·활용 등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적용·융합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1. 18., 2023. 8. 8.>

⑪ 이 법에서 “문화유산데이터”란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2. 1. 18., 2023. 8. 8.>

⑫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2. 1. 18., 2023. 8. 8.>

⑬ 이 법에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란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 기록 및 지식·정보·기술 등을 이용한 창작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멀티미디어콘텐츠를 말한다. <신설 2024. 1. 9.>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④국민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8.>

② 지정문화유산(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수리·실측·설계·감리와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5. 3. 27., 2017. 3. 21., 2019. 11. 26., 2022. 1. 18., 2022. 5. 3., 2023. 8. 8., 2024. 1. 9., 2024. 2. 13.>

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유산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유산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7. 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의3.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의4.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
8.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

②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2024. 2. 13.>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②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문화유산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2023. 8. 8.>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④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유산을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2019. 11. 26., 2024. 2. 13.>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2019. 11. 26.>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①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전문개정 2017. 3. 21.]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등) ①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화재등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1. 23.,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1. 23., 2024. 2. 13.>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화재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 및 매뉴얼의 정기적 점검·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①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유산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30., 2023. 8. 8.>

②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1.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재난방지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② 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등 방지시설을 점검하거나, 화재등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재등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1. 소방관서
2. 경찰관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보호 관련 기관 및 단체

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1.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2.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3. 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의 지원
5.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 11. 26.]

[제목개정 2023. 8. 8.]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역 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1. 지역 문화유산교육 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유산교육 교재의 개발과 운영

3. 지역 문화유산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유산교육
5. 지역 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목개정 2023. 8. 8.]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문화유산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19. 11. 26.]

[제목개정 2023. 8. 8.]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유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내용·교육과목·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⑥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5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8.>

⑦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19. 11. 26.]

[제목개정 2023. 8. 8.]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유산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 2014. 1. 28., 2023. 8. 8., 2024. 2. 13.>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23. 8. 8.>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유산을 특별히 직접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14. 1. 28.]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17. 11. 28., 2019. 11. 26., 2020. 12. 22., 2021. 5. 18., 2023. 3. 21., 2023. 8. 8., 2024. 2. 13.>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삭제 <2023. 3. 21.>

②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도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3. 8. 8.,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2024. 2. 13.>

제36조(허가기준) ①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

1.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②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2024. 2. 13.>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8조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8. 6. 12., 2024. 2. 13.>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17. 11. 28., 2023. 3. 21., 2023. 8. 8., 2024. 2. 13.>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9. 삭제 <2023. 3. 21.>

9의2. 삭제 <2023. 3. 21.>

9의3. 삭제 <2023. 3. 2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4. 2. 13.>

제42조(행정명령)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3. 8. 8., 2024. 2. 13.>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유산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제44조(정기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3. 8. 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문화유산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유산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유산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3. 27., 2023. 8. 8.>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1. 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삭제 <2015. 3. 27.>
4. 문화유산의 수리
5.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6.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8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은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2023. 8. 8.>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4. 2. 13.>

⑦ 국가유산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2024. 2. 13.>

[제목개정 2023. 8. 8.]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개정 2015. 3. 27., 2023. 8. 8.>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개정 2015. 3. 27., 2023. 8. 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2023. 8. 8.>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5. 3., 2023. 8. 8.>

[제목개정 2014. 1. 28.]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제5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2024. 2. 13.>

[제목개정 2018. 12. 24., 2023. 8. 8.]

제5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8. 12. 24., 2023. 8. 8.>

1.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2024. 2. 13.>

1.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2.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3.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유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2024. 2. 13.>

[제목개정 2018. 12. 24., 2023. 8. 8.]

제61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2. 13.>

[제목개정 2023. 8. 8.]

제70조(시·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3. 8. 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④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2024. 2. 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거나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8. 12. 24., 2023. 8. 8.>

⑥ 시·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제70조의2(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② 시·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19. 11. 26.]

[제목개정 2023. 8. 8.]

제71조(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8.>

②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1.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또는 말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2024. 2. 13.>

[제목개정 2023. 8. 8.]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유산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18. 12. 24., 2023. 8. 8.>

제73조(보고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2024. 2. 13.>

1. 시·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4.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4. 2. 13.>

제74조(준용규정) ①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2. 3., 2017. 11. 28., 2018. 12. 24., 2023. 8. 8.>

② 시·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 3. 27., 2018. 10. 16.,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

③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각각 "시·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각각 "시·도조례"로, "국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각각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는 각각 "시·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문화유산위원회"는 각각 "시·도문화유산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8., 2023. 8. 8., 2024. 2. 13.>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3. 8. 8.>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유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3. 8. 8.>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4. 2. 13.>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19. 11. 26., 2023. 8. 8.>

1. 상호 변경
2. 영업장 주소지의 변경
3.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의 변경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① 제75조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유산매매업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문화유산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 8. 8.>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과 제7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76조(자격 요건)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유산을 취급한 사람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서지학·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유산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이하 “문화유산 관련 전공과목”이라 한다)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4. 문화유산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유산을 취급한 사람
5. 고미술품 등의 유통·거래를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대표자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범위, 일정 학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제80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2023. 8.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0조·제92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유산매매업을 허가받은 법인이 해당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3개월 이내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77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

2.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

5. 그 밖에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도지사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④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3. 8. 8.]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3. 8. 8.]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유산의 보호·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

제82조의3(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8.>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훼손된 문화유산의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훼손된 문화유산을 원상 복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제3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2023. 8. 8., 2024. 2. 13.>

② 삭제 <2014. 1. 28.>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② 제1항에 따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5조(문화유산 방재의 날) ① 문화유산을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유산 방재의 날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 8. 8.>

③ 문화유산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제목개정 2023. 8. 8.]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유산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3. 3. 21., 2024. 2. 13.>

1. 제25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사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③ 제35조제1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7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녹지의 점용 및 사용 허가

④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2017. 4. 18., 2023. 8. 8.>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3. 8. 8., 2024. 2. 13.>

1.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제88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2020. 6. 9., 2023. 8. 8., 2024. 2. 13.>

1.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2. 제22조의7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제35조제1항, 제39조, 제56조제2항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4. 삭제 <2023. 3. 21.>
5. 제80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2023. 8. 8., 2024. 2. 13.>

1.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1의2.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1의3. 제3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허가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2. 삭제 <2023. 3. 21.>

3. 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유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8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